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314344 판결 [계약금등 반환청구의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31434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0가단334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론종결 2022. 11. 9.

판결선고 2023. 2. 1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0가단3346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그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는 포도나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다. 또한 그 포도나무가 고사한 것도 아니며, 단지 임차인이 샤인 머스켓 품종을 접붙인 극히 일부의 포도나무에 열상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포도나무의 고사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기일 2020. 5. 31.) 미지급을 이유로 2020. 6. 8.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 및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제6조에 따라 계약금 6,000만 원은 몰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6. 8. ‘잔금 지급 및 계약해지 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들 D이 피고를 대리하여 2020. 6.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E이 2020. 6. 3. D에게 “계약금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6. 3.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설령 그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잔금 지급의 최고와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강수희, 판사 안정현